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2. 28.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2. 20.

다. 상정일자 :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2.28)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위원수 조정(안 제14조)
 - 위원회 구성인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1/3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위원수 조정
- 「위원회의 기능」 내용 추가(안 제15조)
 - 위원회의 기능 중 종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내용 수정(안 제23조)
 -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하도록 수정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5.8.4 법률 제7664호) 제8조 및 제13조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2005.12.28 대통령령 제19197호)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본청의 국장 3명을 2명으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명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14조제4항제3호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안 제15조 제1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과”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 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7. 2. 28.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함(안 제14조제4항제3호).

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함(안 제15조제1호).

다.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함(안 제23조제2항).

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 14조 제 4항 제 3호 중 “및” 을 “또는” 으로 한다.

안 제 15조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안 제 23조 제 2항 “기금운용계획안” 을 “기금운용계획안과” 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생략) ④(생략) 1.~2.(생략) 3.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 ⑤~⑥(생략)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u>안 2.~3.(생략)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금운용 계획안</u>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원안과 같음) ④(원안과 같음) 1.~2.(원안과 같음) 3. ----- 또는 ----- ⑤~⑥(원안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원안과 같음) 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u> 2.~3.(원안과 같음)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원안과 같음) ② ----- <u>기금운용계획안과</u> - ----- ----- ----- -----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